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대전지법 서산지원, 1991.10.25, 91고합58]

【판시사항】

지역신문의 인터뷰요청에 응한 행위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지방의회의원 당선자)이 지방의회의원선거운동기간 전에 주간 지역신문사가 주최가 되어 행한 통상의 취재, 보도에 그 대상으로서 소극적으로 응하여 그의 사회활동경력, 지방자치제에 대한 의견과 완곡한 출마의사의 표시 등에 관한 기사가 신문의 인터뷰란에 실림으로써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다소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문사의 보도행위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얻게 된 이익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8조, 제39조, 제64조

【전문】

【피 고 인】

【주문】

】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취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달력 67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1.1.초순 일자불상경의 사전선거운동의 점은 무죄.

【이유】

】 유죄부분에 관한 판단

【이유】

】 유죄부분에 관한 판단

【이유】

】 유죄부분에 관한 판단

【이유】

】 유죄부분에 관한 판단